**[청구취지]**

\*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대위하는 경우 대위소송의 채무자가 당사자 아니라면 주민번호+주소 반드시 적어야 함

- ‘위 같은 주소’ 적어도 되지만 형식적 기재사항이므로 일일이 기재할 것

|  |
| --- |
| 피고 이민국은, 별지 목록 제1. 기재 부동산 중,   **유덕희[701114-2533447,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0, 101동 501호(신월동, 한라빌)]**에게 3/7 지분에 관하여,   **김민경[980719-2968112,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0, 101동 501호(신월동, 한라빌)]**,   **김준용[011018-3011421,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0, 101동 501호(신월동, 한라빌)]**에게   각 2/7 지분에 관하여,   **각** 2020. 2. 1.7)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|

\* 원인무효등기 말소의 상대방은 소유자임이 원칙 / but 말소등기청구를 대위행사 하는 경우 채무자(소유자) 아니라 채권자(원고)에게 해도 됨

\* 가압류 말소등기청구 X (소의 이익X) 🡪 **소이등 말소의 승낙의 의사표시 \*\*\*\***

|  |
| --- |
| 피고 박성연은 위 가.항 기재 **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** |

\* 사해행위취소 청구취지

- 상대효 표시를 위해 ‘원고와 수익자, 전득자 사이에서’를 취소 청구취지에 적어줄 것 / 각 취소한다라고 할 필요 X

- 수익자, 전득자 등기말소의 상대방은 채무자

|  |
| --- |
| <사해행위취소>  가. **원고와 피고 박이채, 피고 최상진 사이에서**, 최병철과 피고 박이채 사이에 별지 목록 제2.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10. 15.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을 취소한다.  <원물반환>  나. 최병철에게, 별지 목록 제2.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 1) 피고 박이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2. 10. 15. 접수 제12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 2) 피고 최상진은 **같은 등기국** 2022. 11. 15. 접수 제13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|

**[청구원인]**

\*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경우 (대위행사) 적어주는게 쟁점 안 빠뜨리는데에 도움됨

- 순차 대위행사도 마찬가지

\*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 / 권리불행사 한꺼번에 묶어서 뒤에다가 적는게 간단명료함

|  |
| --- |
| (~~등이)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**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(보전의 필요성),**  원고는 **현재 유덕희 등이 행사하고 있지 않은** 위 피고 이민국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 **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 사하고자 합니다(권리불행사).** |

**[기타]**

\* 조문을 잘 적을것

\* 청구원인 🡸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부분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

- 요건사실 대충 외운거 빨리 채울 것

Ex. 매매계약에서 지연손해 청구 == 반대의무 이행제공 계속 && 목적물 인도 (민587)